

PPA 양도양수 구비서류 안내

('26.09.28 작성)

PPA 서류	① 사업용/자가용 전력구입계약(PPA) 신청서(붙임2-1, 2-2 '26.04.01 개정 최신양식 사용) - 신청PPA 관할지사가 아닌 곳으로 신청서 송부 시,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
	② 발전사업허가증(자가용PPA : 불필요)
	③ 사업자등록증
	④ 발전소 양도·양수 계약서 사본 - 전력판매량 권리 양도양수 시기 명시 필요(월분 기준) 예시 '25.12.01 이후 발생한 전력판매량에 대한 권리는 양수자에게 양도함 - 기존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경우 제출 불필요 - 발전대금에 대한 권리는 당사자간 협의와 무관하게 '월분'으로만 지급가능하며, 한전과의 전력구입계약 변경체결일 이후 전력거래로 발생한 발전대금을 발전소 양도인이 지급받는 것은 불가함. (필요 시 채권양도양수 통지 요망) 예시 '25.12.17 양수인 명의로 PPA 변경계약체결하였으나, '26.01월 발전분까지는 발전소 양도인에게 지급 희망 → 발전소 양도인과 한전과의 계약(채권채무)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, 양도인에게 대금지급 절대 불가
	⑤ 전력구입계약(PPA) 양도양수 합의서(붙임3 사용, 의무제출 X) - 전력판매량 권리 양도양수 시기 및 미납, 미환불 접속공사비 권리 상호합의용
	⑥ 계좌이체거래약정서(붙임4 사용)
	⑦ 인감증명서(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-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(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)
	⑧ 채권양도 해지통지서(기존 PPA가 채권양도 통지된 경우, 의무제출 X) - 기존 채권양수인의 채권 해지통지서 제출(임의양식, 채권양수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포함) - 해지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양도양수 계약절차 진행가능하나, 기존 채권양수인과 발전소 양도인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한전이 책임지지 않음.
	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(발전설비용량 20kW 이하 제외) -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, PPA신청서상 안전관리자 연락처 기재 요망 - 단, 특고압연계 PPA의 경우 설비용량 무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제출 필수(소내전력 관련)
	⑩ 소내전력 서류 (전기사용계약)
소내전력 서류 (전기사용계약)	①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(붙임5, '26.08.01 개정 최신양식 사용) - (저압PPA) PPA신청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- (고압PPA) PPA신청자 및 건물(토지) 소유주 도장 날인 또는 서명
	② PPA신청자 신분증 사본 - 법인의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한 법인인감증명서 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) - 개인의 경우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에 인감 날인했더라도, 인감증명서로 대체 불가
	③ 건물(토지) 소유주 명의변경 관련 동의 서류(연계전압별 아래 중 택 1) - (저압PPA) ㉠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상 소유주 날인 + 소유주 신분증 사본 ※ 법인의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한 법인인감증명서 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) ㉡ 사업장 소재지가 전기사용장소(=발전사업허가장소)인 사업자등록증 ㉢ 건물(토지)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- (고압PPA)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상 소유주 날인 + 소유주 신분증 사본 ※ 법인의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한 법인인감증명서 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)
	④ 보증설정(PPA신청자와 건물(토지)소유주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) - (PPA신청자 개인) 수전전력 계약전력 51kW 이상인 경우(연계전압 무관) - (PPA신청자 법인) 수전전력 계약전력 21kW 이상인 경우(연계전압 무관)

※ 관련 규정 변경 시에는 변경 규정에 따르며, 양도양수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